

제 호

[ ]완성  
[ ]정기 검사증명서

1. 상호:

2. 사무소 소재지:

3. 대표자 성명:

4. 사업소 소재지:

5. 검사원 성명:

6. 검사 연월일:

7. 차기 검사일: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 
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(정기검사)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직인

발급지사명(주소):

담당부서:

전화번호:

